

제12장 디지털 무역

제12.1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신뢰, 상호운용성, 혁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 포함)의 대상이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3조, 제12.14조, 제12.15조 및 제12.17조에 포함된 의무는

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 예외 및 비합치 조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된다.

6. 제12.3조, 제12.14조 및 제12.15조에 포함된 의무는 제8.6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2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2.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¹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제13장(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¹ 제12.3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4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12.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12.6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이란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불러오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 가. 오도하는 광고를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는 관행
 - 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고의로 그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 또는
 - 다.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전화 계정, 디지털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관행
3.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2.7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

3.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5.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제도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적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광범위한 국제적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적용된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³으로 수용한다.

제12.9조

물류

³ 이는 양 당사국 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0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모든 국내법과 법 체계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체계를 고려하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 장려, 지원 또는 촉진한다.
 -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채택을 장려한다.
 -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12.11조

특송화물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공 특송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2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 가.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나.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에 보다 높은 상호 운용성을 허용하는 금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간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의 채택을 증진한다.
 - 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증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라. 혁신,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12.13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⁴
-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피해를 가하지 않는 한,

⁴ 양 당사국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제12.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

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6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7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관련 기관”)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⁵

제12.1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나. 젠더 및 사회적 포용 접근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한다.⁶

다.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제, 정책, 집행 및 준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⁵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영업 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나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⁶ 에콰도르의 경우, 나호는 제1.4조(정의)에 정의된 사회연대경제(“SSEs”)에도 적용된다.

- 1) 개인정보 보호
-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 3) 컴퓨터 설비
- 4)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5) 전자 통신상 보안
- 6) 인증, 그리고
- 7) 전자정부

라.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마.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바.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는 민간 부문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을 장려한다.

2.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대로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설치한다.

제12.19조

사이버보안 사안에 대한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제12.20조

데이터 혁신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제12.21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12.22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 및 경험 교환의 증진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2.23조
핀테크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증진한다. 그리고

 -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의 양 당사국 간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2.24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련의 정의된 절차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하나, 금융시장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나 금융시장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 나.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다. 제8.12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다만, 제10.19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는 포함하지 않는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7 8}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금융시장인프라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해당 시스템의 운영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 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⁸ “디지털제품” 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지급,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청산, 결제 또는 기록, 또는

나. 그 밖의 금융 거래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디지털 무역 작업반

1. 디지털 무역 작업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의 증진
 - 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그 이용에 대한 장애 극복 지원
 - 다. 이 장애 관련된 정보 교환
 - 라.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애 관련된 문제 논의
 - 마. 그 밖의 위임된 사안의 이행, 그리고
 - 바.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애 관련된 그 밖의 문제 검토
2. 디지털 무역 작업반은 각 당사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디지털 무역 작업반은 연구자, 학계, 산업계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그 밖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소집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 가능한 시기에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소집한다.

제12장(디지털 무역) 제12.1조제6항에 대한 양해

이 협정의 제12장(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에콰도르 대표단 간 양해에 도달하였다.

양 당사국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상 투자 장의 부재를 고려하여, 제12.1조제6항에 언급된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양해를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2.1조제6항에 더하여, 제12.3조, 제12.14조 및 제12.15조에 포함된 의무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조치가 GATS 제20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이루어진 한쪽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된 조건, 제한,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또는 한쪽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의 한도에서, 그러한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